

제335회 임시회
2014. 10. 24.(금)

심 사 보 고 서

○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14. 10. 24.(금)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14년 10월 2일

다. 회부일자 : 2014년 10월 7일

라. 상정일자 : 2014년 10월 15일

- 제33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가. 제안이유

○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의 성과를 계기로 화장품산업을 창조경제 패러다임을 견인할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 선점하기 위해 도는 2013년에 글로벌코스메슈티컬개발센터 건립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국비 50억원(총 공사비의 50%)은 국가중기재정에 반영이 되고, 금년도 설계비 2억원(국비)을 확보하였으며,

○ 위치는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내 부지로 결정하고 현재 건축설계

공모가 진행중인 글로벌코스메슈티컬 개발센터를 건립하고자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충청북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재산의 취득

《글로벌 코스메슈티컬 개발센터 설립》

- 위 치 : 청주시 오송읍 연제리 625(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내)
- 사업기간 : 2014년 ~ 2016년
- 규 모 : 건축 연면적 4,300㎡(지하 1층, 지상 5층)
- 사 업 비 : 100억원(국비 50, 도비 50)
 - ※ 건립부지는 충북단지 내 우리 도 소유의 토지임
- 주요시설 : 임상시험실, 평가연구실, 효능연구실, 행정지원실
- 사업내용 : 신소재·항노화 화장품 연구, 효능·안전성 평가 등

3. 검토보고 요지

(행정문화전문위원 : 한철우)

- 금번 2014년도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글로벌 코스메슈티컬 개발센터를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부지 9,900㎡, 건축연면적 4,300㎡ 규모로 건축비 100억원을 투자하여 건립할 계획이며 주요시설은 연구지원 및 홍보시설, 임상시험실, 신소재/제품연구 및 품질평가실, 효능연구·평가실을 배치할 예정임.
글로벌코스메슈티컬 개발센터는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능성화장품의 신소재 및 제품 개발, 유효성 평가, 품질검사, 인체적용 시험 등 제품개발의 전과정을 중소기업에게 직접 지원하며 기능성화장품 연구개발을 통해 우리나라 화장품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 화장품의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특별한 이견이 없음.

- 다만, 총 사업비 중에 국비 뿐만이 아니라 토지비용 및 건축비, 시설투자 비용으로 도비가 투자되는 만큼 센터 건립 후에도 연구개발 성과가 지역경제 발전으로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의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제 46 호	일	제출연월일 : 2014년 10월 2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의 성과를 계기로 화장품산업을 창조경제 패러다임을 견인할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 선점하기 위해 '13년 글로벌코스메슈티컬개발센터 건립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국비 50억원(총공사비의 50%)은 국가중기재정에 반영이 되고, 금년도 설계비 2억원(국비)을 확보하였으며
- 위치는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내 부지로 결정하고 현재 건축설계 공모가 진행중인 글로벌코스메슈티컬 개발센터를 건립하고자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 12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 재산의 취득

《글로벌 코스메슈티컬 개발센터 건립》

- 위 치 : 청주시 오송읍 연제리 625번지(오송 첨복단지 내)
- 사업기간 : 2014. ~ 2016.
- 규 모 : 건축연면적 4,300㎡(지하1층, 지상5층)
- 사 업 비 : 100억원(국비 50, 도비 50)
※ 건립부지는 첨복단지 내 우리 도 소유의 토지임
- 주요시설 : 임상시험실, 평가연구실, 효능연구실, 행정지원실
- 사업내용 : 신소재·항노화 화장품 연구, 효능·안전성 평가 등

3.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첨

4. 관계법령 : 별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14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8조

2014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14-2)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 득 기 시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전소유자	비고
	지목	소 재 지	면 적					
계	토지	1건	4,300	10,000,000				
	건물							
	기타							
1	토지							
	건물	청주시 오송읍 연제리 625	4,300	10,000,000	2016.12	화장품산업 지원 시설 건립	-	신축
	기타							
2	토지		이	하	여	백		
	건물							
	기타							
3	토지							
	건물							
	기타							
4	토지							
	건물							
	기타							
5	토지							
	건물							
	기타							

관계 법령 발 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p>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p>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다음 연도 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림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p> <p>제14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 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 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 서식)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9호 서식)